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나2037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나203779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5. 25 선고 2014가합694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17. 2. 24.

판결 선고 2017. 3. 10.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5. 25. 선고 2014가합6946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전 8,655㎡에 관하여 1991.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308,550,000원 및 그 중 8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488,550,000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전 8,655m²에 관하여 1991.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308,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통하여 금전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대항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피고가" 다음에 "자신의 처 E의 이름으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 2행의 "이에…………계속 중이다"를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3654호)에서도 2016. 11. 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대항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9, 14,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된 이후인 2014.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및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566,555,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음에 그치지

않고 잔금 및 피고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지급할 매매대금까지 지급받는 등으로 더 이상 임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원고에게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1,566,555,000원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078,000,000원(= 533,000,000원 + 325,000,000원 + 22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488,550,000원(실제 계산 결과인 488,555,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88,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4.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일인 2014. 9. 29. 비로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4. 9. 28.까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8,550,000원(= 제1심 인용액 820,000,000원 + 당심 추가 인용액 488,550,000원) 및 그 중 8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9.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488,550,000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14. 9. 2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최영은

판사주선아